법령코너

정부 및 유관기관 법령정보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303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21.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09년부터 자율안전확인제도 시행, 신기술적용 제품의 사용 증가 및 소비자의 안전요구사항 증가 등 전기용품 안전관리의 환경이 다양화 되었기에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K10014(농형 3상, 단상유도 전동기 및 이와 유사한 회전기기의 안전성) 등 5종을 제정하고, K00020(전기자기적합성(EMC) - 음성, TV 방송수신기 및 관련기기의 전기자기내성 측정방법 및 한계값) 등 19종의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10014(농형 3상, 단상유도 전동기 및 이와 유사한 회전기기의 안전성)를 제정하여 추가

나.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10015(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물수건 마는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를 제정하여 추가

다.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10016(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물수건 포장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을 제정하여 추가

라.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10017(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애완동물 목욕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을 제정하여 추가

마.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974-10(아크 용접 기기 – 10부 : 전기자기적합성(EMC) 요구 사항)을 제정하여 추가

바.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K00020(전기자기적합성 (EMC) – 음성, TV 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의 전기자기내성 측정방법 및 한계값)의 표2 안테나 단자 "FM 라디오 안테나, TV 안테나"를 "FM 라디오 안테나, TV 안테나, 디지털 라디오 안테나, 디지털1 TV 안테나"로 변경하고, 표8a 동축 안테나 단자의 차폐 효과의 한계값을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고, 4.6.1항 전원 공급단자와 스피커, 헤드폰 단자의 RF 전압에 대한 내성의 한계값에 "DC 입력전원 단자를 가지는 기기는 AC 입력전원 단자를 갖은 기기로 간주해야 한다. 방해 신호는 제조업자/수입업자에 의해 공급되는 외부전원 공급기의 AC 단자에 인가되어야 한다. 만약 전원 공급기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시험 기관은 충분한 내성을 가진 적당한 전원공급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전원 공급기의 사양은 시험 성적서에 기록되어야 한다."를 추가하고, 표15 함체의 정전기시험 적용범위를 "모든제품"으로 변경하고, 5.5항 차폐효과 시험방법이 Active method에서 Passive method로 변경되면서 "수신기의 안테나 단자의 차폐 효과는 채널 내 방해 신호에 대한 내성을 의미하며, 안테나 동축케이블의 표피로 유입된다."를 "수신기의 안테나 단자 차폐효과는 안테나 커넥터, 내부 튜너 및 튜너 케이블의 채널 내 신호 누설에 의한 안테나 케이블에서의 공통모드 전류이다."로 변경하고, 표23 방사 전기자기장 내성 시험을 위한 조건에서 "비디오 녹화(TV 방송 수신 이외의)"를 "비디오 녹화(TV 방송 수신 이외의) 및 비디오 모니터 모드"로 변경하는 등 국제기준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

사.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K10004(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기침대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의 표101 최고온도를 인체의 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침대의 발열체 온도가 아닌 인체가 닿는 보료 표면 부분의 온도를 측정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전기침대의 발열체 – 온도조절기의 두 번째 동작 이전 : 115℃, – 정상 조건 : 95℃, 장시간(3시간이상) 동작시의 표면온도(안전기능에서 표면온도) : 37℃"를 "보료표면 온도 : 50℃"로 변경하고, 13항 운전시의 누설전류 및 절연내력을 전기침대와 유사한 전기매트 (K-60335-2-17)규격의 시험방법을 인용하여 시험내용을 추가하고, 15항 내습성시험에 "인체가 수면도중 땀을 흘릴수 있는 상태를 가정하여 전기침대와 유사한 전기매트(K-60335-2-17)규격의 시험방법을 인용"하여 내용을 추가하고, 19항 이상운전 시험시 시험전압 및 시험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전기침대와 유사한 전기매트(K-60335-2-17)규격의 시험전압 및 시험방법을 인용하여 내용을 추가하고, 19.13항은 판정기준이므로 기존내용을 삭제하고, 전기매트(K-60335-2-17)규격의 기준을 인용하여 내용을 추가하고, 20항 안정성과 기계적 위험 및 21항 기계적 강도에 "분리되는 제어기에 대한 시험방법"이

법령코너

누락되어 내용을 추가하고, 22항 구조에 전기침대와 유사한 전기매트(K-60335-2-17) 규격을 인용하여 내용을 추가하고, 24항 부품시험에 전기침대와 유사한 전기매트(K-60335-2-17)규격을 인용하여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인체가 직접 접촉하는 기기이므로 부품에 이상이 발생하였을때 자동복귀 온도과승방지장치가 아닌 비자동복귀형 온도과승방지장치를 사용하므로 인해 인체의 화상을 막을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고, 25항 전원 접속 및 외부 유연성 코드에 유연성 코드에 대한 인장력 시험이 누락되어 내용을 추가하는 등 전기침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

아.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335-2-55(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5부 : 수족관 및 정원연못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의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에 "전기분수"라는 용어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

자.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335-2-59(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9부 : 전기살충기의 개별 요구사항)의 용어의 정의에 "전기포충기 및 해충퇴치기"라는 용어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

차.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335-2-6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1부 : 축열식 실내용 난방기의 개별요구사항)의 오·탈자 정정을 위하여 개정

카.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335-2-62(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2부 : 상업용 전기 헹굼 싱크의 개별 요구사항)의 오·탈자 정정을 위하여 개정

타.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335-2-70(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0부 : 전기 착유기의 개별 요구사항)를 "[별표2] 참고적용안전기준"에서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으로 변경하고, 오·탈자 정정을 위하여 개정

파.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335-2-72(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2부 : 상업용 및 산업용 바닥처리 자동기기의 개별 요구사항)의 오·탈자 정정을 위하여 개정

하.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335-2-73(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3부 : 고정 투입식 전열기의 개별 요구사항)의 오·탈자 정정을 위하여 개정

거.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335-2-75(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5부 : 상업용 디스펜싱기기 및 자동판매기의 개별 요구사항)의 오·탈자 정정을 위하여 개정

너.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335-2-78(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8부 : 야외용 전기 바비큐 기기의 개별요구사항)의 오·탈자 정정을 위하여 개정

더.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335-2-79(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9부 : 산업용 및 고압 청소기와 증기 청소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의 오 · 탈자 정정을 위하여 개정

러.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335-2-8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1부 : 발 보온기 및 발 보온 매트의 개별 요구사항)의 오 · 탈자 정정을 위하여 개정

머.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335-2-84(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4부 : 화장실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의 오 · 탈자 정정을 위하여 개정

버.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335-2-85(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5부 : 직물용 전기 스티머의 개별요구사항)의 오 · 탈자 정정을 위하여 개정

서.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335-2-88(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8부 : 난방장치, 환기장치, 에어컨디셔너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가습기의 개별 요구사항)의 오 · 탈자 정정을 위하여 개정

어.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335-2-90(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90부 : 상업용 전자레인지의 개별요구사항)의 오 · 탈자 정정을 위하여 개정

저.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335-2-98(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98부 : 전기 가습기의 개별요구사항)의 오 · 탈자 정정을 위하여 개정

처.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K70000(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기소독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의 오 · 탈자 정정을 위하여 개정

3. 문 의

제 · 개정(안)에 대하여 문의가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표준원 연락처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02-509-7242(FAX : 02-507-6657)
- 홈페이지 : http://www.kats.go.kr
-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기술표준원 소식 → 고시/공고